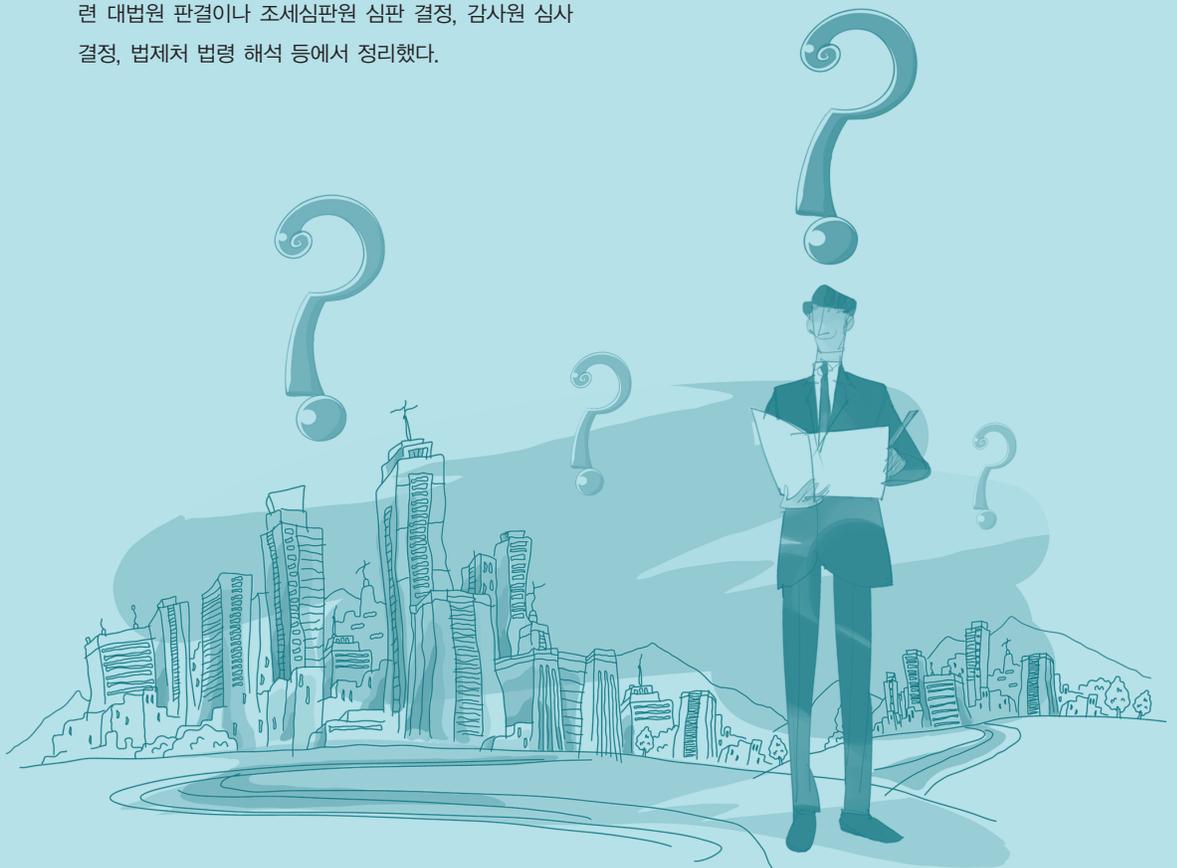


##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하다

일하다보면 복잡한 절차나 관련 법령 등 때문에 간혹 난감할 때가 있다. 옆에 전문가가 있다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련만... 이런 이들을 위해 지방재정에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가 답변해준다. '지방재정'과 '지방세'로 나눠서 궁금했던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자. '지방재정'은 신문고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로 질의해온 것들을, '지방세'는 최근 이루어진 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 감사원 심사 결정, 법제처 법령 해석 등에서 정리했다.



# ‘지방재정’ 공금증 해결

글 \_ 명 삼 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Question

### 총효장학기금 및 저소득자녀 주민장학기금을 민간장학재단으로 통폐합

○○군 ○○장학기금 및 ○○○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장학재단에 통합·폐합하거나 출연금으로 출연, 혹은 위탁 가능한지 궁금하다.

관련 법조항을 보면 통합·폐합은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의 제1항 3호에 의한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한 경우”에, 출연금 출연은 “자치단체 기본관리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의 제1항 4호에 의한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위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에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 기금 적립현황 : 0,000,000천 원 (2011. 12. 31기준)
  - ○○군 ○○장학기금 : 1,026,644천 원
  - ○○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 466,425천 원

## Answer

○○장학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첨부한 관련 조례는 오류로 확인이 안 되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

지만) ○○장학재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의 자금인 기금을 민간재단에 주는 것과,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관련이 없다. 참고로, 자치단체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등을 하는 경우, 그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다. 위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기금 자체의 모든 사무를 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Question

### 지방자치단체에서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우리 단체(○○동우회)는 군에서 2011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00백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하여 타 시군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2012년부터는 퇴직 공무원 모임인 ○○동우회에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최근 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 ●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

- 지원 대상

-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군정 발전과 연계한 사업으로 공공성과 타당성의 파급 효과적 사업

## Answer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행안부 훈령) 별표 8.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동우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대상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우회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구체적인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서초구 의정회 관련 대법원 판례(2004. 4. 23, 선고 2002 추16)에 따르면 “의정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사업이 추상적·포괄적·광범위하여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의정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례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감사원에서조차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토록 권고한 바 있다(2007년 4월).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도 3차(2004년 6월, 2007년 8월, 2008년 1월)에 걸쳐 자치단체 소관사무와 관련이 없거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금 지출이 없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 Question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중 금고의 소재지에서 ‘소재지’의 범위

현재 보건진료소가 독립회계로 운영되고 있다가 일반회계로 전환중에 있다. 대부분의 농어촌 보건진료소는 금고(수납기관)가 위치한 곳에서 승용차로 10~20분 정도 떨어진 의료취약지역에 있다. 수납한 진료비를 매일 원거리에 있는 금고에 납입하기 어렵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6조(수납금의 납입)에는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농어촌에서는 통상적으로 읍·면 소재지라는 말을 읍·면사무소가 위치한 마을권내를 의미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재지’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 Answer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어야 한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약정을 맺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금고의 소재지는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 Question

**금고 계약상대자(을)가 분할·흡수 합병하였을 때 업무처리**

올해 초 우리 청(갑)과 약정한 금고 계약상대자(을, 비영리업자)가 상법상 분할·흡수 합병하여 신설법인(병, 일반사업자)화하였다(상호 변경, 법인번호 변경). 이때 채권·채무 및 연대책임을 병에게 포괄 승계하였다. 우리 청(갑)에서 검토 후 을과 병의 계약상 지위 승계를 인정한다면, 이후 금고 업무처리 요령이 궁금하다. 앞으로 잔여 계약기간이 2년 10개월 남았다.

**갑측 입장** \_ 법인번호 변경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약정이행 각서 등 계약 당시 제출서류를 첨부받아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서 작성

**을측 입장** \_ 상법 제530조 10에 의거 채권채무 및 계약상의 지위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법인에서 포괄 승계하므로, 계약 이전 등 개별적 조치는 취할 필요가 없음

## Answer

상법 제530조의 10과 관련된 사항이다. 회사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 분할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 승계된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7누265).

여기서 말하는 포괄 승계는 일반적으로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승계'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상법 동 조항의 취지, 법원 판례 및 해석 등을 참고하여 법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절차는 자치단체에서 판단 추진한다.

## Question

**사회단체보조금 외의 각종 단체 지원에서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및 정책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및 집행 때 생활체육회와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에 각각 0,000만 원 가량의 차량을 사주는 것이 가능한지? 2010년에는 무공수 훈자회에 차량을 사준 바 있다. 그 영향으로 다른 단체들의 요구가 다수 발생되었다. 이는 차후 다른 단체들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보인다.

2012년 예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문화체육과 민간자본 이전-민간자본 보조로 생활체육회 00만원 차량 구입,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 이전-민간자본 보조로 보훈단체 00만원 차량 구입, 문화체육과 민간경상 보조-생활체육회 운영보조로 0,000×12개월=0,000원이 편성되었다. 이에 관련,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2010년부터 지원하여 사무실 운영비(사무실 임대료 대납, 관리비 대납, 공공요금 대납, 일반 사무용품비 구입 등)로 집행하고 있다. 또한 차량구입비는 각종 대회 개최 때 필요한 앰프시설이나 물품 운반, 운영요원 수송 등에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 지원했다.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근거법이 있으나, 생활체육회 임원들의 행사 참여 및 이동을 위하여 사륜구동 자동차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활체육회의 사륜구동 차량 구입비 지급과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예산에 편성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현재 구 관내 생활체육 종목별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향군인회 산하단체별(6. 25 참전용사회, 무공수훈자회, 해병전우회,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로 각각 차량을 사주는 것도 가능한지 묻고 싶다.

## Answer

민간경상 보조금(307-02)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다. 자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 민간자본 보조금(402-01)은 민간의 자본 형성 또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해당된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질문 내용을 검토해볼 때 민간단체에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비추어 볼 때도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Question

### ‘이전기업 부지매입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융자 심사대상

우리 시 사업 중에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의 50% 범위 내에서 60억 원(도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을 지급하는 ‘이전기업 부지매입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이 투융자 심사대상인지

여부와 더불어 적용법령과 지침내용이 궁금하다. 담당자는 실무검토 결과 '투융자 심사 제외대상'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융자 심사 제외대상인 '신활력사업'의 추진목적과 동일하다고 판단되었다. 우리 시의 경우, 2012년 1월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단순히 이전기업의 부지 매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고, 우리 시가 당해 부지에 대해 취득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투자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 사업명 : 이전기업 부지매입 보조금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 부지 매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 시·도 분담율(도 50%, 시 50%)'에 따라 지원
- 총 사업비 : 6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 사업량 : 총 9개 기업(A기업 외 8개 기업)
- 사업 위치 : ○○시 관내 산업단지 내
- 추진절차 : 기업이전 MOU 체결 → 보조금 신청·접수 → 시 기업유치위원회 심의 → 도 보조금 신청 → 도 보조금 심의 검토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 → 기업 입주 및 사후평가
- ※ 도에서 보조금을 심사 확정하여 예산 배정되기 전까지 정확한 보조금액이나 보조결정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시 예산 확보가 전제 조건이므로 도 보조금 신청 이전에 시비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 통계목 : 민간자본 보조(402-01)
- 추진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4호)'
  - '◇◇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 Answer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투융자 심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제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해당사업', 그리고 '그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지 여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전기업 부지매입 보조금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1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유사사업으로 들고 있는 신활력 사업은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문화관광 사업과 같이 지역이 주체가 되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인재 양성·교육 및 소득창출 사업 등에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해 사업과 신활력사업은 사업 추진목적 및 내용이 서로 다르다. 결국 지방재정법령, 투융자 심사규칙 및 심사 매뉴얼에 따르면 당해 사업은 시에서 부담하는 부지 매입비가 실질적으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다. 다른 사유가 없다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해당된다.

## Question

### 타당성 조사 여부, 투융자 심사주체 및 방법

노후된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 지원시설 집적,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업기간은 약 3년. 총 사업비는 150억 원 내외로 국비 40억 원, 지방비 40억 원(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민자 70억 원(부지 매입비 현물 30억 원 포함)이다.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 건축비는 약 1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협약체결로 기관들끼리 역할을 분담해 국비·도비·시비를 보조받는다. 산업단지관리기관(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건립 부지 제공 및 민자 유치)에서 건립과 사후 관리운영을 맡을 계획이다. 소요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지 않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한 '타당성 조사' 실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또한 이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투자심사의 주체 및 방법은 어떤지 궁금하다.

## Answer

지방재정법령, 투융자심사규칙 및 동 심사 매뉴얼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국가재정법 상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로 대체)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해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150억 원으로 500억 원 미만이고, 주어진 정보를 볼 때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령, 투융자심사규칙 및 동 심사 매뉴얼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150억 원(국비 4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민자 70억 원)으로, 시도 심사사업에 해당된다. 이때 투자심사 주체는 사업 시행주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민간이고, 질문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시비와 도비 분담에서 협약사항 외에 특별한 분담기준과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시·도 어느 쪽으로 해도 무방하다.

## Question

###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편성목)

○○○시 ○○○군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부지 소유자들의 사용 약정(동의)을 받아 군민들은 물론 이 지역을 찾는 국민 모두가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인 ○○○장을 만들었다. 민간자본 보조로 조성된 이 시설의 일부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를 시설비로 편성해야 하는지,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해서 보수 보강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 Answer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제6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고 있는 '통계목'은 경비 성질에 따라 어떤 예산을 어느 목에 편성할 것인지 정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것이다. 경비 성질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용역비 등의 과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목의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이나 공공기관 등에 이전하는 경비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건비와 물건비 등에 편성된 예산과목은 직접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경비이다. 반면 민간경상 이전, 자본 이전, 자치단체 이전 등의 경비는 자치단체가 해당단체에 예산을 지급하고, 해당단체가 그 예산을 최종 집행한다. 따라서 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비이다. 민간자본 보조로 조성된 테니스장의 시설물 보강 사업비를 시설비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수 보강 사업의 내용에 따라 민간자본 보조 또는 민간경상 보조로 편성함이 타당하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 또는 민간경상 보조로 편성할 경우,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련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 지방세 관련 주요사례 모음

글 \_ 오 정 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

## Answer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치분을 한 때에 비로소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세무서장이 2004. 1. 16, ○○○○신용금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3,136,258,180원을 부과하는 경정 결정을 함으로써, 그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런데 ○○○○신용금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 주민세 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그것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므로, 이는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단채권의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변제하게 되고 파산채권에 우선 변제된다(구 파산법 제40조 및 제41조).



##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탁된 금전으로 취득한 수탁자 명의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076 판결)

## Answer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한다. 그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4582 판결 참조).

## Question

### 기부채납 부동산의 비과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 Answer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나아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의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원고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부채납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지만,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대동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점 등으로 인해서 이 사건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 Question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개별공시지가 산출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076 판결)

**Answer**

2010년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선정 및 토지이용 상황을 잘못 평가하여 위법하게 산출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룰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만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산출 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출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는 없다.

## Question

**재산세 소급과세**

재산세를 수년간 비과세하다가 과세로 전환한 경우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9864 판결)

**Answer**

먼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 비과세 처분의 취소와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재산세의 부과처분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의 각 부과처분과 별도로 재산세 비과세 처분의 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각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재산세 납부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비과세로 고지한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원고가 그러한 신뢰에 기하여 어떠한 재산 상의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로, 이 사건의 각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비과세 행위가 원고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임야와 유사한 임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는 피고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일 뿐으로,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까지 정당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각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 Question

### ‘주택’의 정의

‘주택’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갖게 되는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도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두24453 판결)

## Answer

주택법은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주택법 제2조 제1호).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에서도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의 법률조항에서 주택의 개념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려면 별도의 ‘주택’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세실무 상 이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무를 운용하여 왔다.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부동산에 대한 주택 가격이 산정·공시될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새롭게 취득하는 부동산과의 차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주택’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 Question

**종교용 부동산의 직접 사용**

제3자가 종교용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 부동산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1. 11. 13, 선고 2011두20239 판결)

**Answer**

‘직접 사용’에는 해당 재산이 비영리사업자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이상,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자신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참조). 다만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동산을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이유 설시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

기록 상 원고가 토지를 점유한 제3자에 대하여 지휘, 통제 및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졌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토지가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 Question

**‘농지’의 의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에 해당 여부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426 판결)

**Answer**

토지가 이 사건의 골프장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구분되지 않고 잇닿아 있으면서 골프장 둘레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 내에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골프장에서는 매일 수십 명의 내장객이 골프를 치고 있어 토지가 영농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 이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따라 이 사건의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 ☹